

II. 主要 懸案

1. 基幹通信事業²⁾ 進入 制限 철폐의 展望과 課題

- (內容) 政府, 「韓通사태」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基幹通信事業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천명하였음
- (展望) 이번 韓通사태를 해결된 후 각종 지분 제한 및 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公論化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
- (課題) 그러나 民間 企業들의 실질적인 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입 제한 철폐뿐만 아니라 CATV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사업 영역 제한의 철폐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

○ (현황) 현재 基幹通信事業에 대한 각종 持分 制限으로 민간 기업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

- 현행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르면 통신 사업은 시내외 및 국제 전화, 이동 전화, 무선 호출기 사업 등을 포함하는 기간통신사업과 이를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전화 정보 서비스, PC 정보 서비스, 데이터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됨
- 이중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입 제한이 없지만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진입이 허가제이고 각종 지분 제한이 존재함. 기간통신사업 중 시내외 및 국제 전화 등 유선 통신의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 한도가 10%, 이동 전화, 무선 호출기 사업 등 무선 통신의 경우는 33.3%로 제한되어 있음
- 이러한 지분 제한 및 진입에 대한 규제로 민간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에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임

○ (주요 내용) 情報通信部, 民間 企業에 대한 基幹通信事業 進入 制限의 철폐 용의를 밝힘

- 그런데 지난 5월 23일 정보통신부는 96년 하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대주주 지분 한도도 없앨 것이라고 밝힘
- 그동안 대기업에 의한 통신 사업 장악의 허용이라는 여론의 반대와 부처간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기간통신사업에서의 진입 제한 철폐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불구하고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

2) 「기간통신사업」은 시내·시외·국제 전화와 차량·휴대 전화, 무선호출기 사업 등 유무선 망을 통해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이번 발표는 최근 한국통신 사태를 계기로 한국통신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부각시킴으로써,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 허용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
- 특히 이번 발표는 내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일정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음

○ (전망) 「韓通 사태」 해결 이후 進入 制限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추진이 가속화될 것임

- 지금 기간통신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96년 4월을 시한으로 하여 진행 중이므로 97년 이후에는 기간통신시장에 대한 일부 혹은 전면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임
- 한편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망구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에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입이 보장되어야 함
-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파격적인 정보 통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이미 그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지난 4월에 발표한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案에서는 공항, 항만, 공단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 제한없는 진출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
-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한통 사태가 결말이 나면 통신 사업에 대한 각종 진입 제한의 철폐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

○ (과제) 進入 制限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및 사업 영역 제한, CATV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 함께 철폐될 것이 요망됨

- 그러나 단순히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것만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없음
- 민간 기업들이 통신 사업에 뛰어드는 방식은 또 다른 전화망을 구축하여 단순 전화 서비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CATV망이나 광케이블망을 구축하여 주문형 비디오(VOD) 서비스나 화상 전화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될 것임
- 그러나 지금과 같이 CATV 사업에서 망구축 사업자, 프로그램 공급자, 방송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통신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함
- 따라서 진입 제한뿐만 아니라 통신 및 CATV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 및 사업 영역 제한도 폐지되어야 민간 기업들의 진출과 국내 정보 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(김 창 욱)